



##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경찰형사법 OX 문제풀이(4)

| 최정훈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53.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 )
54.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모·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55.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
56.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의 착수 한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57.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

58.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동의 의사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
59. 甲은 乙에게 '네가 오토바이를 훔쳐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사주마'라고 말했다. 乙은 오토바이를 훔쳤다. 이 경우 甲과 乙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
60.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 )
61. 회사 직원 甲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이후에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乙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
62. 甲과 乙은 빈 아파트를 털기로 공모하여 甲은 범행대상의 아파트가 잘 보이는 주차장에서 망을 보면서 신호를 보내기로 하고 乙은 빈 아파트에 들어가 장롱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였다. 乙이 장롱을 뒤지는 동안 망을 보던 甲은 담배를 사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甲의 죄책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다. ( )

63.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 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64.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
65. 두 사람이 서로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가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모두 기수로 처벌된다. ( )
66.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이상 모두 미수로 처벌된다. ( )
67. 甲·乙·丙은 丁女를 윤간하기로 공모하고 서로 망을 보아주면서 순서대로 강간하였으나, 丙은 丁女와 입을 맞추던 중 술김에 구역질이 나서 그만 두었다. 丁女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甲·乙·丙의 죄책은 甲·乙·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이다. ( )

### 【 정답 및 해설 】

【 정답 】							
53	54	55	56	57	58	59	60
O	O	O	X	O	O	X	O
61	62	63	64	65	66	67	
O	O	X	X	O	X	X	

53. [해설]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11.14. 2017도3449).

54. [해설] 대판 2004.10.28, 2004도3994

55. [해설] 대판 1982.6.8, 82도884.

56. [해설] 행위자 상호 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31, 83도2941).

57. [해설] 대판 2008.3.27, 2008도89

58. [해설] 대판 2008.3.13, 2006도3615

59. [해설]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이 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9.30, 97도1940).

61. [해설] 대판 2003.10.30, 2003도4382

62. [해설]

乙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행위인 물색행위 또는 밀접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甲이 범행장소를 벗어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63. [해설]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

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7.4.26. 2013도12592).

64. [해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2017.5.30. 2017도4578).

65. [해설]

공동정범의 본질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66. [해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제263조)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기수로 처벌한다.

67. [해설]

甲과乙은 강간에 대한 상호 의사연락이 없었으므로 동시범이 성립할 뿐이다. 강간치상죄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판 1984.4.24. 84도372), 형법 제19조에 의해 각각 강간죄의 죄책을 진다.